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3. 16 선고 2020가단822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캐나다인)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연

담당변호사 김경혜

변 론 종 결 2023. 2. 2.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1. 피고들과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2017. 12.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한 부분을 10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 부분을 108,101,04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4,050,5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8, 9,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들과 주문 제1항 기재 C의 아버지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7.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C이 각 1/3 상속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② 피고들과 C은 2018. 8. 1.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3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중 피고들이 그 각 1/2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즉 피고들의 지분을 합하면 1이다) 2017. 12. 7.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들은 2019. 7. 25.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4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달 3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C은 별지 국세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국세 108,101,04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러한 C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C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8. 8.경에는 사해행위를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20. 5. 19.에야 채권자취소청구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 이미 원고의 채권자취소청구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8. 8.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당시 또는 그때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5. 19.보다 1년 앞선 2019. 5. 19.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와 같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점 및 나아가 C에게 그러한 사해의 의사가 있었던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부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들이 이를 절반씩, 즉 1/6 지분씩 가지기로 합의한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엄밀하게는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분은 C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이다.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 중 본세는 모두 망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 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납부기한도 그 전에 도과하였으므로, 그 본세 및 가산금(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모두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부분을 특정하면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분)은 채무자인 C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이 사건 채무에 대응하는 원고의 C에 대한 국세채권 108,101,040원 전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특별수익

피고들은, C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87,500,000원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이므로, 이러한 C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그러나 을 제1 재지 5,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인정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지분 자체, 즉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들이 취득한 것은 F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분, 즉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이고, 피고들 중 1인이 취득한 것은 그 절반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이다.

그 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가액배상을 함에 있어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2. 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00,000,000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종결일에도 그러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미 201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340,000,000원에 매도한바, 그 매매 이후의 가액 변동은 피고들의 이익과는 무관함에도 그 증가된 부분까지 피고들의 가액배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들이 원고의 직접적인 채무자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대금 340,000,000원을 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100,000,000원 \{ = (340,000,000원 - 40,000,000원) \times 1/3 \}$ 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채무액 108,101,040원보다 작다.

따라서 피고들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100,000,000원이고, 피고들 중 1인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그 절반인 50,000,000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사해행위취소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분을 100,0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

별지

1)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이에 따라

상속등기와 그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 제2의 나에 의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